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분야

중대재해 처벌법의 이해

해설서

주의사항

- 이 해설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서, 법령의 골자와 주요 제도들에 대한 개요 및 제도 해설 등을 담았습니다.
- 이 해설서는 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이 해설서는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행정 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새롭게 변화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해설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해설서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이력

목 록	주요 개정 내용	발행 시기
초 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초판 발행	2021년 12월
제1차 전면개정	 전면개정 ■ [변경] 해설서의 개요 및 조항별 해설에 대한 목차 수정 ■ [변경] 법령 내 명시되지 않은 '표준안' 표현 등은 <예시>로 표현 수정 ■ [변경] 법령 내 명시되지 않은 내용 삭제 및 기존 해설서에서 누락된 법령 내용 추가 ■ [변경] 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법 조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조문별로 알기 쉽게 풀어 설명 ■ [신설]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2-26호, 2022. 1. 27., 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원료나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기준을 정함	2023년 12월
제2차 부분개정	 부분개정 ■ [보완] 실무 혼선이 빈번한 항목에 대해 사례 중심 설명 추가 및 기존 Q&A 간 중복 내용 정리 ■ [보완] 질의 유형별 구분 항목의 시각적 구성(레이아웃) 개선을 통해 가독성 향상	2025년 12월

I. 법의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 10
2. 구성 및 체계 | 12
3. 용어 정의 | 17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23
5.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무 | 24

II. 주요 제도 해설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 28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33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 37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45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6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48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 51

III. 주요 제도 외 조문별 해설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 56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 59
3. 형 확정 사실의 통보 | 60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60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61

IV. 첨부 참고자료

1.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 64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 72
3. Q&A | 106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 143

해설서 구성



목 차	키 워 드	페이지	해당 법령
제 1장 법의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법 #제정	10 법 제1조
	(2) 구성 및 체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12 -
	(3) 용어 정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7 법 제2조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미만	23 법 부칙 제1조제1항
	(5)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 등의 책무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원료·제조물분야 #안전보건확보의무	24 법 제9조
제 2장 주요 제도 해설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재해예방 #인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조치	28 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재해예방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조치	33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유해·위험요인 #점검 #신고 #원인조사 #개선	37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재발방지대책 #이행조치	45 법 제9조 제1항 제2호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선명령 #시정명령 #이행조치	46 법 제9조 제1항 제3호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의무이행 #반기1회 #이행여부점검 #보고	48 법 제9조 제1항 제4호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의무교육 #반기1회 #실시여부점검 #보고	51

해설서 구성



목 차		키워드	페이지	해당 법령
제 3장 주요 제도 외 조문별 해설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56	법 제10조 ~ 제11조, 제15조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서면 #전자문서 #조치이행사항 #관련서류 #기록보존 #5년	59	시행령 제13조
	(3)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양벌규정 #형확정사실 #관계행정기관장통보	60	법 제12조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법위반여부 #형사재판	60	법 제14조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중대재해종합예방대책 #발생원인분석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기술지원 #교육및홍보	61	법 제16조
제 4장 첨부 참고 자료	(1)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국내 #국외 #중대시민재해사례	64	-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인력 #시설 #장비 #의무교육	72	
	(3) Q&A	#Q&A	106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138	

PART

1



I. 법의 개요

1. 제정 배경 및 목적
2. 구성 및 체계
3. 용어 정의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5. 사업자 및 경영책임자등의 책무

1

제정 배경 및 목적

(1) 배 경

| 원료·제조물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미흡으로 시민 안전 위협

- 다양한 화학물질이 일상생활 속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시장의 다변화로 인해 시민의 유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목 적

|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재해 예방 필요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원료·제조물의 위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법률제정('22.1시행)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이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이용시설 및 공공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구성 및 체계

(1) 법의 구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총 4장 1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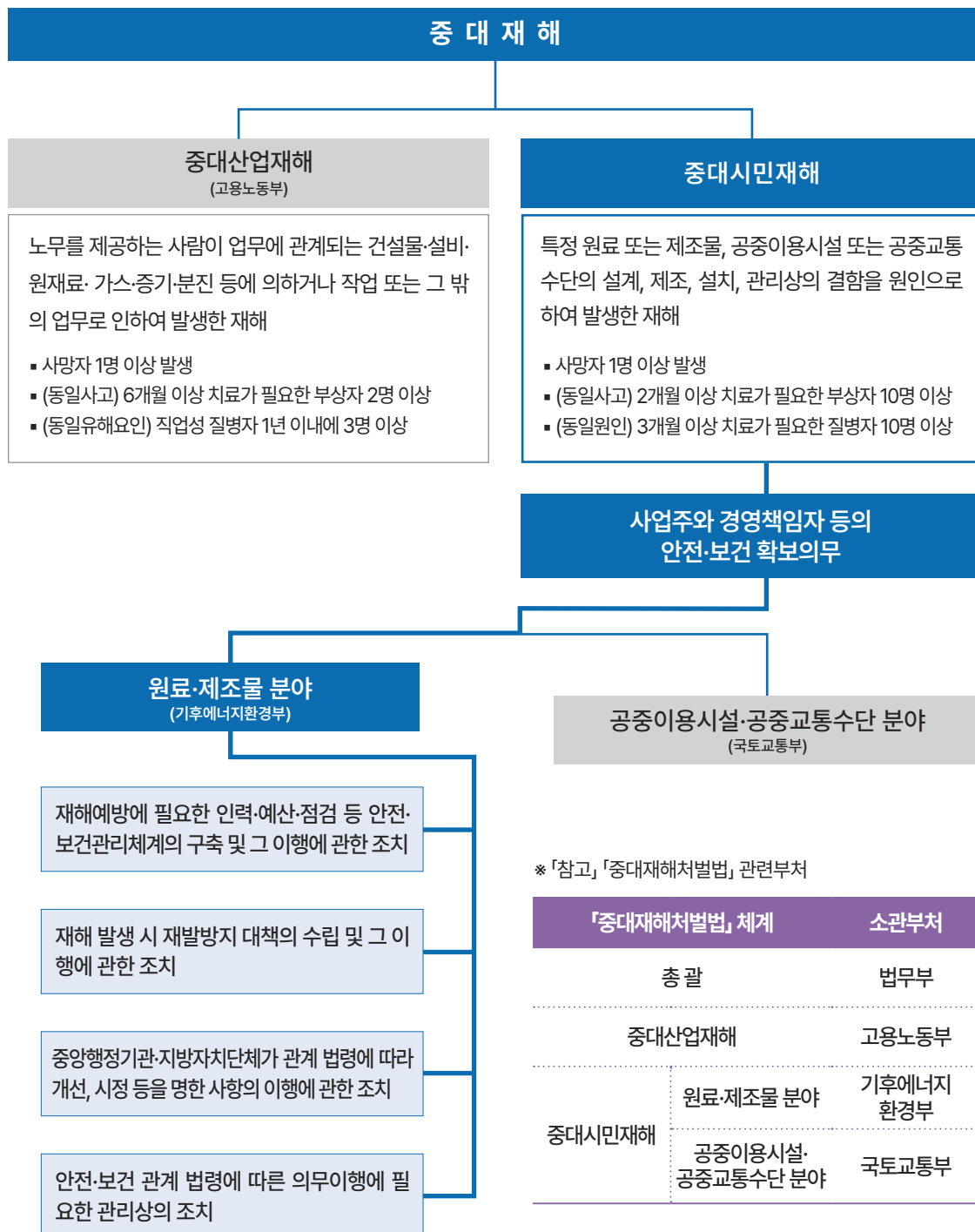
<표 1> 「중대재해처벌법」체계(4장 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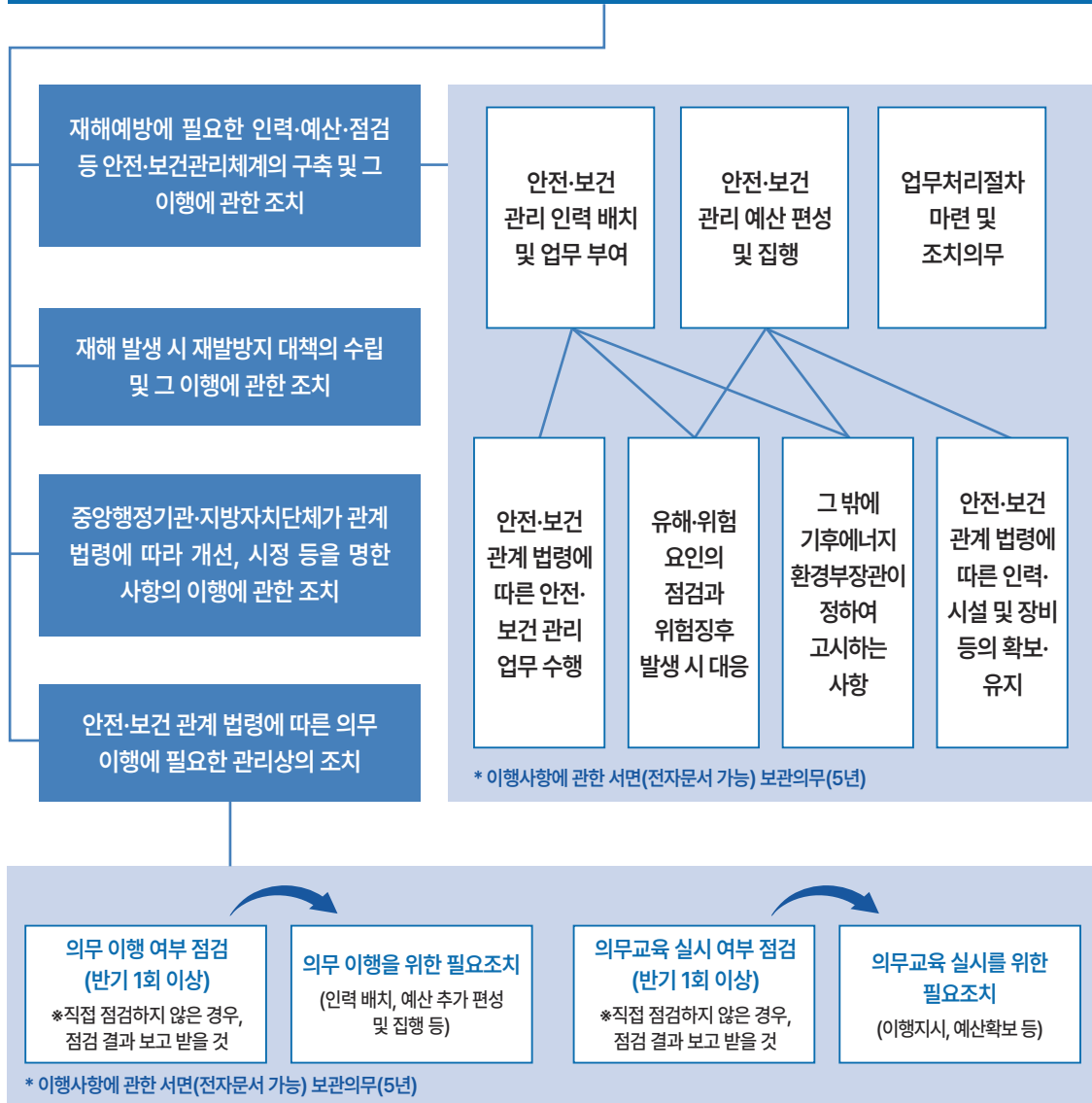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 목적,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 ~ 제8조	▪ 적용범위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처벌, 양벌규정 및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 ~ 제11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처벌 및 양벌규정
제4장 보칙	제12조 ~ 제16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형 확정사실의 통보,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및 손해배상의 책임 ▪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부칙	제1조 ~ 제2조	▪ 시행일 ▪ 다른 법률의 개정

(2) 법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총괄 : 법무부



원료·제조물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본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3장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해설서에 포함되지 않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들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대시민재해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 부처 |



법령	관련 부처	문의처
고압가스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044-203-398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수소)	044-203-3985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법령 제·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농약 등록·제조·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농약 유통·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마약류관리법	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제40조)	044-202-3871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정책과)	043-719-2805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1893
화학제품 안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6, 6807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회수명령 등 사후관리)	044-201-6809, 6825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 승인)	044-201-6804, 6827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044-201-6829, 6826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11,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40, 204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5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5,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식품관련 법령 유권해석)	043-719-2040,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67

|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 부처 |



법령	관련 부처	문의처
약사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 약국 등)	044-202-2491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 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유통질서, 도매상 등)	044-202-2493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DUR, 공급내역 보고)	044-202-2488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02-397-7337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334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02-397-7303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5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제13조제3항, 제13조의2,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044-202-2493
총포화약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61
화학물질 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총괄)	044-201-6840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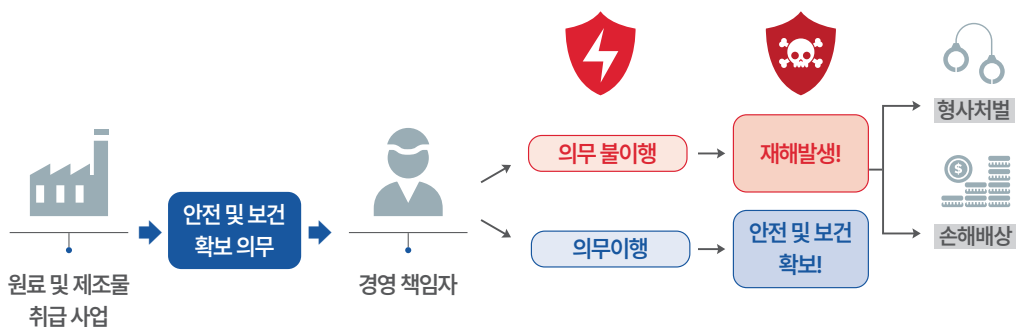
3

용어 정의

(1)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법 제2조제3호)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결과 중 하나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사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의 범위

2-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법 제2조제8항 및 제9항)

용 어	정 의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2-2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의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경우 등

2-3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정의

용 어	정 의
원 료	- 정의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말합니다.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제 조 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6호).

원료·제조물의 적용범위

원료·제조물이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은 원료 및 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재난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태풍, 강풍, 낙뢰, 지진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생산·제조·판매·유통의 정의

- 생 산 : 재배 · 채굴 · 수확 · 어로 · 번식 · 사육 · 수렵 · 제조 · 가공 · 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 제 조 :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생화학무기법 제2조제10호가목)
- 판 매 :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18호)
- 유통 : 상품 따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되고 분배되는 활동(표준국어대사전)

Ⅰ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 “구입” 및 “사용”하는 과정에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 또는 사업장(최종 사용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며, 사용 단계의 제품이 사용자의 관리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설계·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Ⅰ 위탁생산 및 온라인판매의 경우

- **(위탁생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 생산 과정도 포함됩니다.
- **(온라인판매)**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4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

용 어	정 의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나목).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가목).
관리상의 결함	- 정의를 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말함*”을 의미합니다. *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그러므로 “관리상의 결함”이란 원료·제조물의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해당 원료·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 중대산업재해의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법 제2조제1호).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에 대하여 각각 기소되거나 병합하여 기소될 수 있습니다(처벌 또한 병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예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2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9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2명**

[* 중대산업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인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2명 이상) 및 1년 이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자(3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1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10명**

[*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10명 이상) 및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2명과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시민 10명이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 2명, 중대시민재해 10명**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각각 기소하거나 병합하여 기소하는 것은 담당 검사의 재량인지에 대한 쟁점 검토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해 각각 또는 병합하여 처벌할 수 있음'



4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법 부칙 제1조제1항)

|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

-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조제1항 본문).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 2024. 1. 27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

[주의]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사용 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책무 (법 제9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아래와 같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① ~ ④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 및 제9조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

→ 관련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1) ~ (3)"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9조제1항제2호)

→ 관련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4)"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1항제3호)

→ 관련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5)"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9조제1항제4호)

→ 관련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6) ~ (7)"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PART

2



II. 주요 제도 해설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1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Q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취급하는 원료·제조물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1호 Q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 인력 요건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배치와 업무는 본 해설서 “제4장.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내용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이행 현황 파악 후 부족한 경우 보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이행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안전·보건 인력 배치 및 업무부여와 관련된 규정 없는 경우일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인력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인력은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이 있으며, 각 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안전·보건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규모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I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의 배치와 업무 부여

1.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업무
2.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업무
3.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을 위한 업무
4.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등의 업무
5.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등의 업무

※ 반드시 새로운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안전·보건 인력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규모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점검 및 대응업무의 내용]

구체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징후발생 시 대응 업무의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3)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I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2-26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2.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 안전진단, 성능시험, 성능평가, 품질검사, 안전정보알림, 품질관리체계 운영,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3. 원료·제조물의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유해·위험요인 점검업무
4.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원료 및 제조물의 파기, 수거, 판매중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보수, 보강 등 긴급안전조치 및 조치결과통보 업무
5.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 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I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호).

<예시>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력 확보 예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구 분		인 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1)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2)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3)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4)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5)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 종업원 10명 미만: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겸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 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의 경우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 종사자 5000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라, 각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한 인력을 갖추고 해당 인력이 안전·보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중대 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2호>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3.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



1. (인건비) 원료·제조물 안전관리 업무, 시설·설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인력의 인건비
2. (시설·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비) 원료·제조물 취급시설 등의 안전과 정비·점검을 위한 신규 시설 및 장비 확보비용, 기존 시설 및 장비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
3. (안전점검비용)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비용(위탁시 위탁비용으로 별도기재)
4. (기타비용) 재해발생 및 우려 시 안전조치비, 계획수립, 안전교육, 관련 서류작성 및 보관 등의 행정비용

<표 2> <예시>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필요 예산

구 분	예 산
고압가스법	▪ (제조·저장·판매) 시설·기술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 (수입) 시설·기술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 (운반) 운반차량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농약관리법	▪ (제조·수입·판매) 시설·장비 요건 준수 및 유지 예산
마약류관리법	▪ (제조·수입·판매)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비료관리법	▪ 생산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화학제품안전법	▪ (제조·수입) 제조·보관 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식품위생법	▪ (제조·가공·운반·판매·보존) 시설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 (급식)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약사법	▪ (약국)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 (제조·수입) 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의료기기법	▪ (제조·수입) 시설과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체계 유지 예산
총포화약법	▪ (판매)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화학물질관리법	▪ (취급)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 (운반) 운반장비 및 시설기준 준수 및 유지 예산

관계 법령에 인력, 시설 및 장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의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다.



I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예산 항목을 편성·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예산

1.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추고 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비용(인건비 등)
2.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3.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4.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6.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대응 업무를 법으로 정한 경우, 위 예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과 중복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및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업무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은 본 해설서 “제2장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산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2-26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2.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3. 유해·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긴급안전조치
4.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직무교육, 관리자교육, 판매자교육, 기술교육, 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

| 위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제5호).



3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제4호>

1.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2.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4.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I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 의무 대상

- 아래 특정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 3>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

예 산	구 분
독성가스(제28조제2항제13호)	고압가스법
농약(제2조제1호), 천연식물보호제(제2조제1호의2), 원제(제2조제3호) 및 농약활용기자재(제2조제3호의2)	농약관리법
마약류(제2조제1호)	마약류관리법
보통비료(제2조제2호) 및 부산물비료(제2조제3호)	비료관리법
살생물물질(제3조제7호) 및 살생물제품(제3조제8호)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제2조제1호), 식품첨가물(제2조제2호), 기구(제2조제4호) 및 용기·포장(제2조제5호)	식품위생법
의약품(제2조제4호), 의약외품(제2조제7호),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제85조제1항)	약사법
방사성물질(제2조제5호)	원자력안전법
의료기기(제2조제1항)	의료기기법
화약류(제2조제3항)	총포화약법
유해화학물질(제2조제7호)	화학물질관리법
위 원료·제조물에 준하는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유해한 원료 또는 제조물 (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그 외 기타 법령

I 소상공인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에 해당할 것

I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 별표 5의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그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방법

- 사업장 순회점검 또는 청취조사
- 안전·보건 자료 또는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청취조사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절차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절차

1.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의무(제23조의2제1항) → 자체 점검계획(안전계획 내) → 안전 관리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보완 및 개선 계획, 설비·장치의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계획(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고시)에 따른 이행
2. 「고압가스법」 안전관리규정 작성의무(제11조) → 탱크운반,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별표 15]) → 안전관리규정의 이행
3. 「건강기능식품법」 자가품질검사 의무(제21조) → 주기적 자가품질검사(시행규칙 [별표 7]) / 원재료 검사 확인 의무(제21조의2) →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건강기능식품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재료 검사 이행
4. 「광산안전법」 성능검사(제9조), 안전규정 제정(제11조) → 광산안전사항 점검(근로자 준수사항, 화약사용 사항, 전기·기계설비 안전, 광해방지 등) 이행
5. 「농약관리법」 자체검사업무(제24조제2항), 농약 등의 안전사용 기준(제23조) 등의 준수 의무

I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업무처리절차 마련

-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및 조치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처리절차의 법적인 형식은 없지만 예시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업무처리절차 서면 양식 예시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업무처리절차 서면 양식

1. 사업장 일반현황

상호(명칭)		업종	취급하는 원료·제조물 종류	안전보건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 사무실 등				
주소(사업장)					

2. 유해·위험요인 목록 및 안전장치

①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원료·제조물 관련 유해·위험요인 목록

② 안전장치·장비 목록 및 배치도

3. 유해·위험요인 점검 계획

내 용	추진일정	추진절차	예산 확보 여부	미확보시 조치 계획
(점검대상/ 내용 등)	점검주기, 수시점검 요건 및 준비사항 등	결과보고, 피드백 절차 등		

4.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및 확인에 따른 조치

① 내부 대응	비상 연락체계 및 비상 대응조직 상세, 신고접수 및 조치방안 등
② 외부 대응	관계기관의 신속한 보고 및 신고 절차

5.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 및 조치 계획

①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신고, 전파절차 등) 및 가동중지에 관한 절차 등

② 응급조치계획(가동중지, 회수, 응급구호 조치 등)

6.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

①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

② 단기 및 중장기 사고복구 계획

<예시>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신고 및 조치업무처리 절차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담당자가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의 신고 절차(예: 안전·보건 담당자 및 현장 작업자의 참여 기반 신고제도 등)를 마련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에 따른 조치]

-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신고 또는 조치요구 시, 안전·보건 담당자 등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경미한 경우 자체 개선을 합니다.
- 신고에 의해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에게도 조치결과를 전달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이 심각한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징후발생과 대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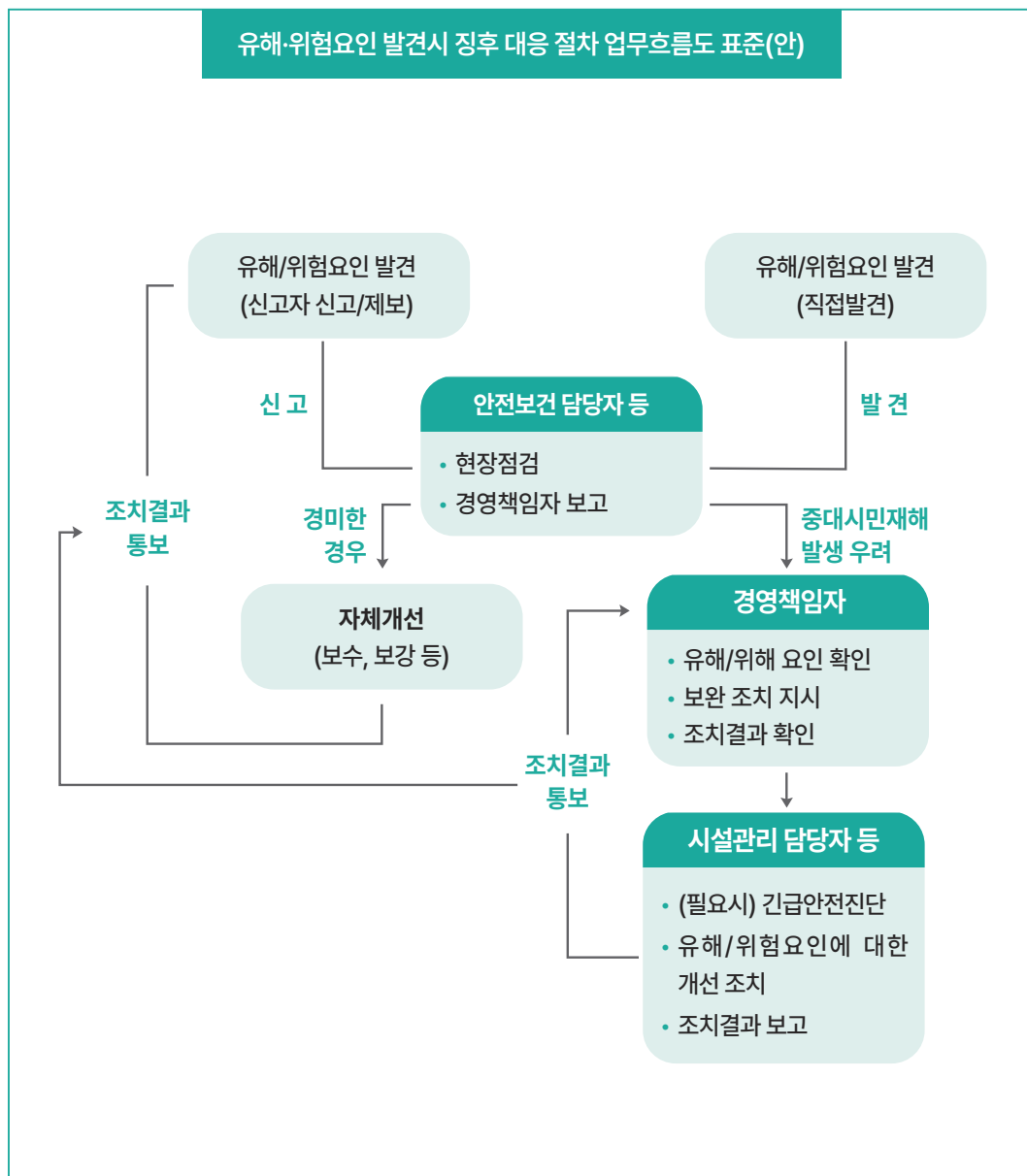
-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험징후 대응업무를 이행하며, 위험 징후에 대한 대응인력을 갖추고 이에 대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합니다.
- 위험징후가 발생 시, 생산·제조·판매·유통되고 있는 원료·제조물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긴급대응방안의 내용

- 해당 원료·제조물의 종류
- 해당 원료·제조물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 판매 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해당 원료·제조물의 이용자 등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절차



I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업무처리 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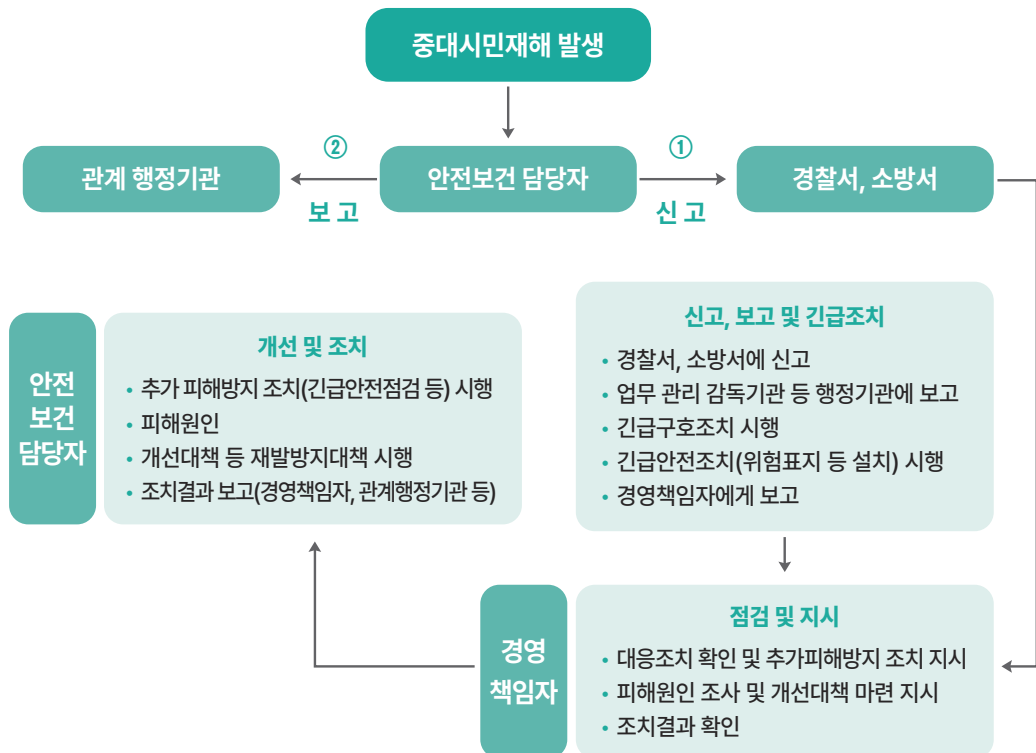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관리 담당자의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 피해방지 조치를 지시하며, 상황 종료 후 피해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등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 이에 따라 안전관리 담당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합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신고사항>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 현황-피해확산 현황, 현장 응급조치 현황, 대피 현황 등
3.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 및 보고체계 예시



4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발생 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표 4> <예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을 위한 계획서 구성

구 분	내 용	상세 내용
I	사고 개요	사고유형, 현황, 현장정보, 사고정보, 피해상황
II	조사 내용	조사방법, 조사활동 상황 문서점검, 현장조사 내용
III	사고 원인 분석 및 결론	(필요시) 시험실시, 기타 자문 등을 통한 원인분석 결과 ※ 사고의 과학적 원인과 업무 절차상의 원인 모두 포함
IV	재발방지 대책	자체 방지대책, 명령에 따른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
V	향후 조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계획 등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료·제조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원료·제조물의 회수 등의 권고 또는 건의되는 경우, 이를 수행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시>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명령 사항

「고압가스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 등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 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 등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중앙행정기관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표 5> <예시>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사항 이행조치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구성

구 분	내 용	상세 내용
Ⅰ	명령 사항 확인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는가?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했는가?
		개선,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 후 해당 내용을 관련 담당자 등과 공유했는가?
Ⅱ	이행조치계획서 마련	이행조치를 위한 계획서를 마련했는가?
Ⅲ	이행조치 실시	이행계획에 따라 이행을 했는가?
Ⅳ	재발방지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가?
Ⅴ	이행조치결과 정리 및 보고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했는가?
		이행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정리한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했는가?

<예시>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회수명령 등)에 따른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제조 또는 수입 금지, 미확인 또는 미승인,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 살생물물질: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미승인,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 취소
- 살생물제품: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미승인,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 취소, 표시기준 미준수
-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미준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치명령 이행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

① 조치계획서

-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 조치 계획량
-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조치결과보고서

-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예상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조치결과보고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을 배치 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표 6> <예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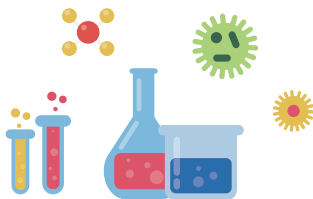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약사법」 약사, 한약사의 연수교육 (법 제15조)	약사 및 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 - 매년 6시간 이상
「마약류 관리법」 마약류 취급자,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법 제50조)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 -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 1회 2시간
「화장품법」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 (법 제5조)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 - 최초교육: 종사한 날부터 6개월 내 - 보수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날 기준 매년 1회
「건강기능식품법」 영업자, 종업원의 교육 (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 매년 2시간
「의료기기법」 품질책임자 교육 (법 제6조의2)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매년 1회 이상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 제33조)	* 아래 상세 내용 참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교육대상		교육시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2년마다 16시간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8시간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2년마다 8시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2년마다 8시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2년마다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교육대상	교육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법정 의무교육의 상세한 근거와 내용은 본 해설서 “제4장. (3)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법정 의무 교육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새로운 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기존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PART

3



III. 주요 제도 외 조문별 해설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3. 형 확정 사실의 통보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가)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10조)

법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구 분	처 벌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 제11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합니다.

구 분	양 벌
(사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법 제9조)를 이행하고, 그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 및 보관(시행령 제13조)하는 등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다) 손해배상의 책임 (법 제1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시민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를 이행하고, 그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하여 서면을 작성 및 보관(시행령 제13조)하는 등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2

서류의 기록 및 보존 (시행령 제13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 각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가 부여되는 사항	해당 법령
안전·보건 관리 인력 배치 및 업무 부여	시행령 제8조제1호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8조제2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제4호
인력 확보, 예산 편성·집행의 이행 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	시행령 제8조제5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예외>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에 해당할 것

3

형 확정사실의 통보 (법 제12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으로 인해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처벌

4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 『중대재해처벌법』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5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

Ⅰ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사업주,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 교육 및 홍보의 시행
-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유해·위험 시설의 개선,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 진단·관리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Ⅱ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PART

4



IV. 첨부 참고자료

1. 국내의 중대시민재해 사례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3. Q&A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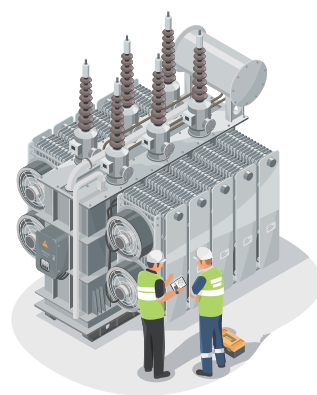
1

국내외 중대시민재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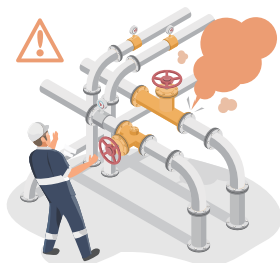
아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망·상해사고가 발생한 사례로서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가 규정되었다고 가정하여 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사건명(1)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 가	대한민국
발생 연도	2011
사실관계	-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폐손상 등으로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건임 2012년 2월 폐손상 환자 사례와 같은 조직병리 소견이 동물에서 관찰 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최종 확인
피해 규모	2021년 10월 31일 기준 피해 신청자 수는 총 7,598명으로 사망자는 1,724명(영유아 290명 포함)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위와 같은 제조물의 설계 또는 제조 과정에서의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같은 사실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내 용
사건명(2)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
국 가	대한민국
발생 연도	1992
사실관계	▪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甲과 乙을 덮쳐 전선에 중 화상을 입고 甲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의 하자를 인정함 -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나, 제조사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된 물건을 구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조물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음
피해 규모	▪ 사망 1명, 중화상 1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대상임 * 예) 유해·위험요인 점검 인력이 없었거나 있었다더라도 적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인력 등이 부족했던 것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거나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구 분	내 용
사건명(3)	구미 불화수소가스 누출 사건
국 가	대한민국
발생 연도	2012
사실관계	▪ 2012년 9월 H주식회사 구미 공장에서 탱크 컨테이너의 생산설비로 불화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밸브를 연결하는 작업 중 불화수소가 누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명의 근로자와 펌프수리업체 직원 1명이 사망 - 탱크 컨테이너에서 계속 누출된 불화수소는 인근 사업장과 지역주민, 사고를 수습하던 관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망 5명, 입원치료 12명, 건강검진 7,162명, 농작물 237.9ha, 가축 3,209두, 차량 1,138대 등의 피해 발생
피해 규모	▪ 사망 6명(근로자 1명, 시민 5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원료의 관리상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관리상의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 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모두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두에 대하여 각각 기소하거나 병합하여 기소하는 것은 담당 검사의 재량인지에 대한 쟁점 검토를 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재해 각각 또는 병합하여 처벌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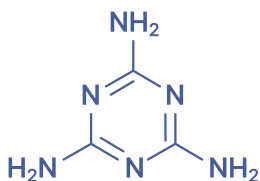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건명(4)	거제 백병원 집단환자 발생사건
국 가	대한민국
발생 연도	2002
사실관계	▪ 2002년 10월 ○○제약 근이완제 ‘갈라민주’를 맞고 1명 사망 등 집단 쇼크사고를 일으킨 사건 ▪ 식약처의 조사결과 ○○제약 근육이완제 갈라민주(H005)에서 혐기성인 “엔테로박터크로아케”균과 호기성인 “코리네박테리움세로시스”균, “바실루스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였음 - 특히 ○○제약 주사제 멸균기 등 생산설비가 전반적으로 노후했으며 제조관리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조지시서의 임의 발행, 생산담당자의 공정 불량품을 재생하는 등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인위적 사고라고 밝혔음 - 8개월 동안 제조관리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 품목 생산 중단조치를 내림
피해 규모	▪ 사망 1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제조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제조상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인력 배치 요건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내 용
사건명(5)	기침약(시럽) 내 디에틸렌글라이콜 검출
국 가	파나마
발생 연도	2006
사실관계	▪ 2006년 9월, 파나마 대형 병원들에서 많은 환자들이 동일한 특이증상을 보이는 것이 발견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기침약을 분석한 결과, 독성이 강하며 공업용제 및 부동액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디에틸렌글라이콜이 검출 - 디에틸렌글라이콜은 의약품, 음식, 치약 및 기타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글리세린의 저렴한 위조품 - 가짜 글리세린은 한 업체가 99.5% 순수 글리세린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260,000명의 기침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 기침약 복용으로 인한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소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 규모	▪ 최소 100여 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제조상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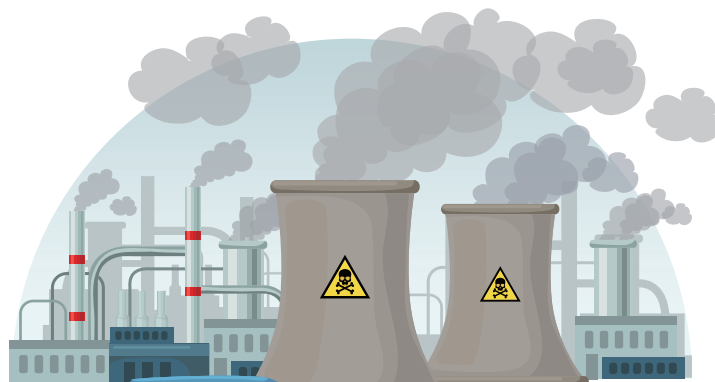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건명(6)	멜라민 분유 파동
국 가	중국
발생 연도	2008
사실관계	▪ 2008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인 멜라민이 함유된 유아용 분유가 중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사건 ▪ 분유 제조업체들은 단백질 함량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한 것으로 밝혀짐 ▪ 신장결석, 요로감염 등 인체 악영향을 미쳐 약 300,000명의 중국 유아와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6명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됨
피해 규모	▪ 사망 6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설계상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내 용
사건명(7)	불법 유통 주류 섭취로 인한 메탄올중독
국 가	체코
발생 연도	2012
사실관계	▪ 2012년 8월, 체코의 한 기업은 에탄올과 메탄올 혼합액을 함유한 1만 리터의 독성 주류를 생산함 ▪ 해당 주류는 기존 주류와 겉모습이 동일하게 보였으며, 암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서도 판매됨 ▪ 메탄올중독의 첫 사례는 2012년 9월 발생하였으며 그 후 환자는 11개 지역에서 발견됨 ▪ 초창기 3명의 환자는 입원 당시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사망 후 법의학 연구소에 의해 메탄올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짐. 이후 체코 내 모든 병원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적으로 주의보가 내려짐 ▪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총 121건의 메탄올중독이 발생함. 병원 입원환자 101명 중 21명은 사망하였고, 병원 외부에서의 사망자는 20명으로 집계됨
피해 규모	▪ 사망 41명, 입원환자 101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물의 제조상 결함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제조상 결함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이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점검결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내 용
사건명(8)	인도 유독가스 스티렌 누출 사고
국 가	인도
발생 연도	2020
사실관계	▪ 2020년 인도 남부의 OOOOOO공장에서 독성가스인 스티렌 가스가 유출된 사건 ▪ 회사 내 관리 태만의 원인으로 탱크 설계 불량, 냉장 및 냉각 시스템 불량, 공기순환 시스템 부재, 매개변수 측정 불량 등의 여러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함 ▪ 사고를 대비한 적절한 예비체계가 없었으며, 경보 사이렌 시설 또한 고장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피해 규모	▪ 사망 12명, 인근 주민 병원치료 5,000여명
「중대재해처벌법」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적용	▪ 위와 같은 제조물의 관리상의 결함이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예) 위와 같은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2항
- 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22조(산업보건의)
-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직의 선임 등) ▪ 시행령 제30조(산업보건직의 자격) ▪ 시행령 [별표2](안전보건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 시행령 [별표6](보건관리자의 자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6조(관리감독자) ▪ 법 제17조(안전관리자) ▪ 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 제22조(산업보건의) ▪ 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시행령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 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법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법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 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법 제38조(안전조치) • 법 제39조(보건조치) • 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법제5장도급시산업재해예방 ▪ 법제6장유해·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 법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법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원자력안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106조(교육훈련) ▪ 시행령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 시행령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 시행규칙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 시행규칙 [별표5의2](교육의 과정 및 시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53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 ▪ 법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 시행령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령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 시행령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 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 시행령 [별표3](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인력기준) ▪ 시행령 [별표4](업무대행자의 등록 시 인력기준) ▪ 시행규칙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 시행규칙 [별표1의2](방사성동위원소등 허가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인력기준) ▪ 시행규칙 [별표1의3]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55조(제55조(허가기준 등) ▪ 시행령 제83조(허가기준) ▪ 시행령 [별표2](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등의 허가 시 장비기준)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1조(허가기준) 제1항 ▪ 법 제15조(계량관리규정) ▪ 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약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15조(연수교육) ▪ 법 제34조의4(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 법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법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 법 제44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 ▪ 법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제5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 시행규칙 제26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 실시) ▪ 시행규칙 제27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의 교육계획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임상시험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4조(제조관리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조(정의) ▪ 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 법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 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법 제36조(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 법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법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 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 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 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 법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3항 ▪ 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제2항 ▪ 시행령 제22조의2(약국의 시설 기준) ▪ 시행령 제31조의2(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제32조(한약업사의 시설 기준) ▪ 시행규칙 제37조(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준) ▪ 시행규칙 제43조(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설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 법 제23조(의약품 조제) ▪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 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 법 제27조(대체조제) ▪ 법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 법 제29조(처방전의 보존) ▪ 법 제30조(조제기록부) ▪ 법 제37조(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의무) ▪ 법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법 제38조(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 법 제39조(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 법 제44조의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 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 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 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 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 법 제62조(제조 등의 금지) ▪ 법 제64조(안전용기·포장 등) ▪ 법 제65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14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50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조(정의) ▪ 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법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 법 제33조(마약류관리자) ▪ 법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법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 시행규칙 제26조(마약류의 저장) ▪ 시행규칙 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2조(정의) ▪ 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 법 제6조의2(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 법 제15조(마약류의 저장) ▪ 법 제16조(봉합) ▪ 법 제17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법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 법 제20조(수입한 마약 등의 판매) ▪ 법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 법 제22조(제조한 마약 등의 판매) ▪ 법 제34조(마약 등의 관리) ▪ 법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 법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교육) ▪ 법 제51조(원료물질의 관리) ▪ 법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화장품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 시행규칙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 시행규칙 [별표1](품질관리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3조(영업의 등록)

	▪ 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의 등록 등) ▪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 시행규칙 제8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자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 시행규칙 [별표1](품질관리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제2항 ▪ 시행규칙 제6조(시설기준 등) ▪ 시행규칙 제8조의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4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 법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 법 제5조의2(위해화장품의 회수) ▪ 법 제9조(안전용기·포장 등) ▪ 법 제15조(영업의 금지) ▪ 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 시행규칙 제7조(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등) ▪ 시행규칙 제11조(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별표1](품질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2](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고시)

농약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시행령 제21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실시요령(고시) ▪ 농약의 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고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 ▪ 법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항 ▪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1](제조업·원재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1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 시행규칙 [별표1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항 ▪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 등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1](제조업·원재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1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 시행규칙 [별표1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20조(농약 등 및 원제의 표시) ▪ 법 제21조(제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등) ▪ 법 제23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 시행령 제19조(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 시행령 제20조(농약 등의 취급제한기준)

비료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 시행령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 시행령 [별표2](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3](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 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 및 신고 의무) ▪ 시행규칙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 시행규칙 [별표3](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사료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법 제16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항, 제6항
의무교육 규정	- 시행규칙 제17조(교육훈련 등)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제9조의2(교육훈련 등) -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고시) [별표5](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 시행규칙 제9조(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제2항 - 법 제20조(자가품질검사) 제1항 - 시행규칙 제6조(제조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1](배합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2](보조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3](단미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7](사료제조업자 등이 사료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 - 법 제13조(사료의 표시사항) - 법 제13조의2(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등의 표시) - 법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 법 제20조(자가품질검사) - 시행규칙 제10조(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2조(교육의 실시) - 법 제39조(자체안전교육) - 시행령 제26조(교육실시) - 시행령 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 - 시행규칙 제48조(자체안전교육계획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14](총포·도검·화약류 분사가·전자총격가·석궁 제조업자 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4조(제조업의 허가) ▪ 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 법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 법 제9조(수출입의 허가) ▪ 법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소지허가) ▪ 법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법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 법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 시행령 제50조(운반방법) ▪ 시행령 [별표15](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 시행령 [별표16](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 시행규칙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허가신청) ▪ 시행규칙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6조(판매업의 허가) 제4항 ▪ 시행령 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 시행령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 시행령 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 시행령 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 ▪ 시행령 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 시행령 제41조(피뢰장치) ▪ 시행령 제42조(흙독) ▪ 시행령 제43조(간이흙독) ▪ 시행령 제44조(방폭벽) ▪ 시행규칙 제8조(제조시설의 보안거리) ▪ 시행규칙 제10조(위험공실의 연결기준) ▪ 시행규칙 제11조(위험공실의 방폭식 구조)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유포 금지) ▪ 법 제10조(소지의 금지) ▪ 법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 법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13조(교육) ▪ 시행규칙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 시행규칙 제19조(교육시간) ▪ 시행규칙 제20조(교육계획 등)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예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5조(영업의 허가 등) ▪ 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 ▪ 법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 법 제12조(품질관리인) ▪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시행규칙 제15조(품질관리인의 수)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1](업종별 시설기준)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법 제10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등) ▪ 법 제12조(품질관리인) ▪ 법 제13조(교육) ▪ 법 제14조(기준 및 규격) ▪ 법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등) ▪ 법 제2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법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 법 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 법 제22조의 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법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 법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시행령 제5조(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4](영업자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7](자가품질검사기준)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

의료기기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제13조(품질책임자 교육 내용·시간 등)
- 시행규칙 [별표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6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 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제11조(품질책임자 자격 등)
-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 시행규칙 [별표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규칙 제8조(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제35조(수리업의 신고 등) 제4항
- 시행규칙 [별표2](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4](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5](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6조의2(품질책임자 준수사항 등)
- 법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 법 제18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 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
- 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 법 제21조(외부포장 등의 기재사항)
- 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 법 제25조의5(불합)
- 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 법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 법 제31조(부작용 관리)
- 법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 시행규칙 제12조(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
- 시행규칙 제27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 시행규칙 제36조(수리업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39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
- 시행규칙 제40조(판매업자·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 시행규칙 [별표2](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4](수입업의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5](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3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51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31](안전교육실시방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법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법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법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 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 시행령 제5조(용기 등의 제조등록) ▪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시행규칙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 시행규칙 [별표14](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 시행규칙 [별표15](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법 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법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시행규칙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주요 안전·보건 관계	▪ 법 제15조(안전관리자)
법령상 업무	▪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시행규칙 [별표15](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 시행규칙 [별표2](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 시행규칙 [별표2](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법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 법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 법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 법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 법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 법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 법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법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법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2항 ▪ 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 법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 법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 법 제49조(기록 및 보고) ▪ 시행규칙 [별표2](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

식품위생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제8항 ▪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5항 ▪ 법 제52조(영양사) 제2항 ▪ 법 제56조(교육) ▪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시행규칙 제54조(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 시행규칙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법 제40조(건강진단) ▪ 법 제41조의2(위생관리책임자) ▪ 법 제51조(조리사) ▪ 법 제52조(영양사) ▪ 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시행령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 시행령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시행령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14](업종별시설기준) ▪ 시행규칙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25](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 제6조(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 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예의 사용 등 금지) ▪ 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 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항
- 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 법 제31조의3(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법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 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법 제45조(위해식품 등의 회수)
- 법 제46조(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 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2항
- 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 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시행규칙 [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1항
- 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 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4항
- 시행규칙 [별표6](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법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 시행규칙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시행규칙 [별표5](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예규
(한국환경공단규정)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9조(화학물질확인) ▪ 법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 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 법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 법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등) ▪ 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 법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 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 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법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1항 ▪ 법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 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법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법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 ▪ 법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 법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 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 법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2항 ▪ 법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항 ▪ 시행규칙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 시행규칙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시행규칙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 시행규칙 [별표1](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시행규칙 [별표9](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광산안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7조(안전교육) ▪ 시행령 제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10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1]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조(정의) ▪ 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 법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 시행령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 시행규칙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 시행규칙 제1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 시행규칙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 시행규칙 [별표3](안전관리직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제4조(안전조치)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 법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 법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 법 제11조(안전규정) ▪ 법 제16조(보고) ▪ 법 제17조(광산안전도의 작성) ▪ 시행령 제4조(안전조치) ▪ 시행령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시행령 제13조(안전규정에서 정할 사항) ▪ 시행규칙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조작 시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4조(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 시행규칙 제5조(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6조(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 시행규칙 제9조(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 시행규칙 제20조(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 시행규칙 제21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 시행규칙 제22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23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 시행규칙 제27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 시행규칙 제28조(위험 발생의 보고) ▪ 석유광산안전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17조(위생 교육) ▪ 법 제26조(교육명령) ▪ 시행규칙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제2항 ▪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시간 등) ▪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 시행규칙 [별표8]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 시행령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 시행규칙 [별표7](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3항 ▪ 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 법 제18조(영업자의 준수사항) ▪ 법 제20조(수입신고) ▪ 법 제23조(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 시행규칙 [별표8](영업자 준수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규칙 [별표4](보고, 제출 및 검사 항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 법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 법 제17조(안전인증 등) ▪ 법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법 제2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법 제23조(안전확인인의 표시 등) ▪ 법 제24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법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 법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 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 시행규칙 제5조(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0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고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조(정의) 제5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고시)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 법 제15조(안전점검 실시) ▪ 시행령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법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 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법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 법 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 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 법 제21조(보험가입) ▪ 법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법 제23조(보고·검사 등)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고시)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5항, 제6항 ▪ 법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시행규칙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 시행규칙 [별표10](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및 기간) ▪ 시행규칙 제73조(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 ▪ 시행규칙 [별표13](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10조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별표1](기술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제7조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별표1](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고시) [별표2](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별표1](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 시행규칙 [별표9](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별표1](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4조(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 법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 법 제8조(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법 제13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 법 제15조(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 법 제19조(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법 제2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법 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 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 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 법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 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 시행규칙 제40조(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8조(안전교육)
- 시행령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24](안전교육의 과정·기관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제2항
- 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제1항
-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 시행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제14조(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 시행령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 시행령 [별표5](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6](제조소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 관리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7](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 시행규칙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2조(정의)
- 시행령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 시행령 [별표2](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
- 시행령 [별표3](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6항 ▪ 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제1항, 제6항 ▪ 법 제17조(예방규정) ▪ 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법 제19조(자체소방대) ▪ 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 법 제21조(위험물의 운송) ▪ 법 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 시행규칙 [별표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	---

해사안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제1항 제2호, 제3항 ▪ 시행규칙 제33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 시행규칙 [별표11의3](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46조의2(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 법 제61조의2(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운영 등) ▪ 시행령 [별표4](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 시행령 [별표4의2](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 시행규칙 [별표11의2](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5조(선박·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 ▪ 법 제25조(항행장애물의 보고 등) ▪ 법 제26조(항행장애물의 표시 등) ▪ 법 제28조(항행장애물 제거) ▪ 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 법 제35조(수역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 ▪ 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법 제41조의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법 제43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 법 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법 제46조의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
- 법 제47조(인증심사)
- 법 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지하수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34조의2(교육 등)
-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6](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별표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6](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법 제9조(준공신고)
- 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법 제9조의5(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법 제13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법 제15조(원상복구 등)
- 법 제1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1항
- 법 제1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 법 제1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 법 제20조(수질검사 등)
- 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법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수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36조(교육)
- 시행령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 법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 시행령 제33조(수도시설관리자) ▪ 시행령 [별표2](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 시행령 [별표2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 시행령 [별표2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 시행령 [별표3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 시행규칙 [별표7의2](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 시행규칙 [별표8](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 시행규칙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8조(시설 기준 등) ▪ 시행령 제49조(수질검사시설의 설치) ▪ 시행령 [별표3의4](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 사항) ▪ 시행령 [별표2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 ▪ 시행규칙 [별표3](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7의2](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 법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 ▪ 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 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 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법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 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 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 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 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 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법 제34조(저수조청소업의 신고) ▪ 법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등) ▪ 법 제45조(소화전) ▪ 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시행령 [별표2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먹는물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8조(품질관리교육) ▪ 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13항 ▪ 시행규칙 제17조(품질관리교육) ▪ 시행규칙 제18조(교육과정 등) ▪ 시행규칙 제36조의3(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제6조(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 시행규칙 [별표2](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 ▪ 시행규칙 [별표8](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지정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20조(시설 기준) ▪ 시행규칙 [별표3](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 시행규칙 [별표3의2](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8조의2(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관리) ▪ 법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법 제13조(환경영향조사) ▪ 법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 법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 법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 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 법 제22조(샘물 등의 수위·수량·수질 관리) ▪ 법 제26조(수입신고 등) ▪ 법 제27조(품질관리인) ▪ 법 제30조(준수 사항) ▪ 법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 법 제47조의3(먹는샘물 등의 회수) ▪ 시행규칙 [별표5](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 시행규칙 [별표8의2](검사기관 준수사항)

도시가스사업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30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14](안전교육 실시 방법)
----------------------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법 제29조(안전관리자) ▪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 시행령 [별표1](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 시행규칙 [별표8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 시행규칙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시행규칙 [별표5](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 안전진단·안전성평가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2](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3](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4](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5](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의6](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 기준) ▪ 시행규칙 [별표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3조(사업의 허가) ▪ 법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 법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 법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 법 제10조의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 법 제10조의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 법 제10조의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 법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변경신고) ▪ 법 제10조의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 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법 제11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법 제15조(시공 감리 등)
- 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법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 법 제17조의3(안전관리수준평가)
- 법 제17조의4(도시가스배관의 안전관리)
- 법 제19조의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 법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제3항
- 법 제25조의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 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 법 제26조의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 법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법 제28조의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법 제28조의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 법 제30조의5(협약·순회점검)
- 법 제30조의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법 제30조의7(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법 제39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법 제41조(보고 등)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선박안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제27조(교육대상자, 교육내용)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별표28](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 [별표29](교육과정별 최소 교육시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법 제24조의2(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 법 제77조의2(위험물검사원)
- 시행규칙 제63조(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 요건)
- 시행규칙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26조(선박시설의 기준)
- 법 제29조(무선설비)
- 법 제33조(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 시행규칙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고시)[별표2]
(지정사업장의 설비)
- 선박설비기준(고시)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7조(건조검사) ▪ 법 제8조(정기검사) ▪ 법 제9조(중간검사) ▪ 법 제10조(임시검사) ▪ 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 ▪ 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 ▪ 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 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 법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 법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법 제24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 ▪ 법 제27조(만재흡수선의 표시 등) ▪ 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 법 제30조(선박위치발신장치) ▪ 법 제32조(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 법 제34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 법 제35조(하역설비검사기록 및 비치) ▪ 법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 법 제37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 법 제38조(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 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 ▪ 법 제40조(산적화물의 운송) ▪ 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법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 법 제42조(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검사) ▪ 법 제43조(예인선에 대한 예인선항해검사) ▪ 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 법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승인의 대행) ▪ 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 시행규칙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41조(안전교육) ▪ 행규칙 제66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19](안전교육 실시방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별표1](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시행령 제15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시행령 제3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 시행령 제5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 시행규칙 제42조의2(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 시행규칙 [별표15](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의 시설기준과 허가 등) ▪ 시행규칙 [별표4](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 시행규칙 [별표6](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시행규칙 제16조(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공급시설) ▪ 시행규칙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시행규칙 [별표4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술·시공감리·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 시행규칙 [별표5](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 시행규칙 [별표7](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시행규칙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시행규칙 [별표20](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24조(판매 등의 방법) ▪ 법 제26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 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 ▪ 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법 제35조(시설의 시공·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 법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법 제36조의2(시공감리) ▪ 법 제3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법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법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순회점검) ▪ 법 제49조의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법 제49조의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 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 시행령 제8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 시행규칙 [별표13](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 ▪ 시행규칙 제42조(가스공급자의 의무) ▪ 시행규칙 제47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고시)
--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 시행규칙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 시행규칙 [별표11](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 ▪ 시행규칙 [별표12](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령 [별표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 시행규칙 제10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시행규칙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규칙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 시행규칙 [별표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별표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요건) ▪ 시행령 [별표3](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 ▪ 시행령 [별표4](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춰야 할 장비) ▪ 시행규칙 제33조(전기안전관리 장비) ▪ 시행규칙 [별표10](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11조(정기검사) ▪ 법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법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 법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 법 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 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시행규칙 제36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석면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시행규칙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 시행령 [별표3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법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 시행규칙 [별표2](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8조(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 법 제9조(자가 측정) - 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 법 제18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 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 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 법 [별표](석면 등의 사용 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 - 시행규칙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시행령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5조(안전인증 등) ▪ 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 법 제8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법 제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 법 제10조(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금지) ▪ 법 제17조(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법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법 제19조(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금지) ▪ 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 법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법 제26조(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 법 제29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법 제30조(표시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32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등) 제1항 ▪ 법 제33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등) ▪ 법 제34조(판매 등의 금지) ▪ 법 제34조의3(안전성검사 등) ▪ 법 제34조의4(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 법 제34조의5(안전성검사표시 등이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 법 제40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 법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법 제2조(정의) 제14항, 제17항 ▪ 시행규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관련 규정 없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5조(사업자의 책무) ▪ 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 법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 법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24조(위해성평가) 제2항
- 법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법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 법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법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법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 법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 시행령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 법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9항
- 시행규칙 제17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인력 규정

-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5](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 시행령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시행령 [별표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 시행규칙 [별표6]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시설 및 장비 규정

- 시행령 [별표11](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업무

- 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법 제1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법 제20조(안전점검 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 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 등의 통보)
- 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 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 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 법 제26조(안전점검 등의 대행)
- 법 제3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 법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 법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 법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제2항

3

Q&A

01

#원료·제조물 #용어정의 #범위

QUESTION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 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QUESTION

자동차, 승강기 등도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볼 수 있을까요?

자동차, 승강기 등은 그 속성에 인체 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은 무엇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6호 “제조물”의 정의에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승강기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하므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시민재해 해당여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여부,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책임주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 법령 내용 내 원료·제조물의 범위 및 기준은 시행령 별표 5에 기재되어 있는 원료·제조물만을 의미하나요?

법령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원료·제조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으로 모든 원료·제조물을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은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4가지 의무사항을 조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8조제4호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해야합니다.

QUESTION

전기를 생산(발전)하여 한전으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면 생산한 전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물에 해당하나요?

법령에서는 적용대상 원료·제조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료·제조물의 적용범위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 등의 사유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면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전기·전선 등이 제조물에 포함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기를 생산(발전)하기 위하여 석탄을 사용하고 발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산, 암모니아 등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황산, 암모니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료로 보아야 하나요?

제조물의 구성성분을 이루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원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산, 암모니아 등을 사업장에서 유통하지 않고 공급업체에서 받아 사업장 내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료로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축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며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법령 내 “제조물”의 정의에서 건축물은 원료·제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의 정의에서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는 건물 내 승강기, 소방설비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교육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실험·연구용 시약·약품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나요? 또한 연구원이나 시약을 배송하는 사람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시설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물질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원료·제조물의 대상을 열거·특정하지 않으므로, 연구·실험 목적의 시약·약품도 결함 또는 부적정한 관리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원료 또는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를 볼 때에는 ①결함의 존재와 유형(표시·경고 미흡, 혼재·반응 위험 관리 실패, 보관·환기 기준 미준수, 제조 결함 등), ②시설의 지배·운영·관리 주체와 안전조치 이행 수준, ③피해 발생 경위와 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 관련 타 법령 준수 여부나 중대산업재해 해당성 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실험실에서 시약을 취급하는 연구원이나 시약을 배송하는 개인이 곧바로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행위가 다른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참고로, 해당 물질이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리대상 원료·제조물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대응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등 사전조치가 요구됩니다.

[예시]

- 반응열·가스 발생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계획으로 화상·흡입 손상이 발생(관리상 결함)
- 독성물질 라벨 훼손·경고문 미비로 오투약·오사용 발생(표시·경고 결함)
- 냉암소 보관 대상 물질을 상온 방치해 누출·증기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 발생(보관·관리상 결함)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처럼 음식·음료를 제조·판매(제공)하는 곳도 중대시민 재해의 원료·제조물에 해당하나요? 구내식당, 학교급식, 지자체 청사 임차 구내 식당 등도 포함되나요? 면적이나 HACCP 지정 여부가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

제공되는 음식·음료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고, 제조·조리·추출·혼합(예: 커피·음료)·보관·유통·판매 과정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상 원료·제조물을 열거·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식당·카페·제과점·구내식당·학교급식과 같은 형태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또한, 면적이나 HACCP 지정 여부는 이 법의 적용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품목이 식품에 해당하는지 등 최종 해석은 소관부처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에서는 ①시설 소유·임차·운영, 위탁·하도급 구조 등 통제력과 관리 책임의 귀속, ②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 ③사전점검·위해정보 제공·기록관리·사후조치의 적정성을 함께 봅니다.

[유의사항]

- 포장 식품 판매뿐 아니라 현장 제조·조리·추출·혼합 과정(예: 커피·음료, 제과·제빵)에서도 위해 요인 관리 필요
- 외주·임차 운영 시 권한·책임(원재료 검수, 온도·위생 기록, 회수·보고 절차)을 계약서로 명확화
- 식품 해당성은 소관 부처에 사전 질의로 확인(의심 품목, 신규 메뉴·공정 변경 시

건설산업장비 임대업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임대·대여되는 건설장비도 사용 과정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제3자에게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조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업자는 인도 이전 점검(제동·유압·전기·안전장치 등), 사용설명·경고 제공, 주기적 정비와 기록관리, 결함 신고·회수 절차 등을 포함한 예방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원인이 장비 자체의 결함(예: 안전장치 불량, 구조적 하자)이나 임대자의 정비·점검 미흡에 있다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용도 외 사용, 임차인의 중대한 부주의 등 임차 측 지배·운영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는 책임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책임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귀속되며, 임대·임차 간 계약에서 정한 통제·관리 범위와 실제 이행 수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제품이나 원료의 운송을 외부 업체(수급사)에 맡긴 경우,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과 적재·온도 관리 등을 누가 실제로 정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나요? 운송 중 사고가 났을 때 원청과 운송사 중 누구의 책임으로 볼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려 주세요.

운송 중 사고의 책임은 ①사고가 제품·원료의 결함이나 취급상 하자와 연결되는지, ②운송 경로·적재 방법·온도 유지·포장·점검·기록·이상 대응 등을 누가 실제로 정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청이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했거나 포장재·용기·탱크로리 등 설비를 제공·관리했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송사가 조건을 스스로 정하고 관리했으며 원청의 통제가 미약했다면 운송사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큼니다.

다만, 제품 결함과 무관한 일반 교통법규 위반이나 단순 부주의로 난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 책임은 실제로 통제·관리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귀속되며,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 판단됩니다.

QUESTION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전기나 지역난방용 고온수도 원료·제조물에 해당하나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법령 목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취급 대상과 공정의 성질에 따라 식품, 가스, 화학물질, 전기, 열공급 등 분야별 법령·고시·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판단합니다.

전기나 지역난방용 고온수처럼 성질이 특수한 대상도 공급·유통 과정에서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이 존재하고, 사업자가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으며, 그 결함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법에 따른중대시민재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제권이 미약하거나 결함과 사고의 인과가 불명확하면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대상의 특성(무형·유체 여부), 공급·제어 방식, 경고·보호장치·운영기준의 설정과 이행, 피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UESTION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제조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나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원료·제조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5]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은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처리절차마련 대상이 되는 원료·제조물을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적용대상 원료·제조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발생에서 동일한 사고 및 원인의 의미와 치료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같은 경우라도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없는 경우라면 각각의 사고가 별개의 사고에 해당할 뿐 '동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해당 부상과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2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치료기간이 최초 진단일에는 2개월 미만이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 하나의 사고 또는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해당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3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재활에 필요한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도 원료·제조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료·제조물에 의한 중대시민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도 적용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시민재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적용 예외가 없습니다.

QUESTION

일반 시민이 사업장 내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 어디에 해당 되나요?

중대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산업재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 내 근로자 외의 사망 등]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부상의 사고라도 노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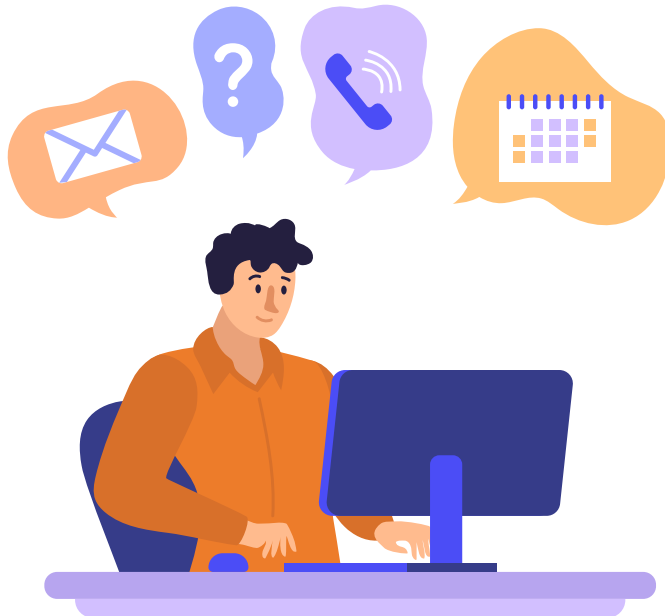
예) 제조공장에 방문한 견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범위 등의 문의가 있을 때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원료·제조물 분야)중대시민재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75), (공중이용 시설·공중교통수단 분야)중대시민재해는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594)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 소관부서에서도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소관부처
총괄		법무부
중대산업재해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분야	국토교통부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 수급인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수급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급인의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경영의 총괄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1)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

→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장장, 현장소장 등 개별 작업장 또는 사업장의 실무상 책임자 또는 대표자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총괄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경영책임자 등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제9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표현은 양자택일의 선택적 의미가 아니며,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주체는 양자 모두이고 의무 불이행의 책임도 모두 부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사안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불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의 행사나 그 결정에 관여한 정도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질 것입니다.

(1) 사업대표 및 총괄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공동대표이사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2) 하나의 법인이 복수의 사업부분을 가지고 사업부분마다 책임자가 다른 경우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개의 사업부분이 있으면서, 법인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총괄 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업주나 법인이 직접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작업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한 개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도급인의 사업장'

-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위험장소)를 포함합니다.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1.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기 전 사업주(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소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등을 관리, 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 등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판단합니다.

QUESTION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됩니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제9조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내 원료 또는 제조물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해당하나요? 혹은 원료 또는 제조물을 사용·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 의무가 부여되나요?

법령 내에서는 취급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이 생산, 제조, 판매, 유통하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고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의 관계]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없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인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이행은 문서화*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서화와 기록보관에 관한 내용은 본 해설서 “제3장. (2)서류의 기록 및 보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살생물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중 인력 기준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별표 2])

-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사람 및 환경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할 것
- 원료, 자재, 제품의 보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만약 사업과 관련된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기준이 없다고 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점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해설서 “제2장. (3)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조치의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은 시행하고 있으나,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하나요?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전담 조직을 반드시 구성하거나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해당 인력 및 예산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다만, 인력 배치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검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QUESTION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해 어떠한 업무절차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업무절차]

모든 구성원이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사업장 관계자는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재해의 우려가 있는 요소를 제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재해 우려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이에 준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조치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시민재해 및 기타 재해발생 현황 등을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재해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유출된 경우들을 분석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인 물질을 보다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장소 및 지역에 작업자 및 주민의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완충지대를 조성하거나 이격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경우 이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 주변 주민의 접근이 가능한 위험설비 및 기계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생산·제조·보관 과정에서 독성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취급상태 등을 파악하고, 대체가 가능한 경우 가급적 독성이 낮은 물질로 교체해야 합니다.
- 제조물에 독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업무수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기본적으로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다음의 예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시>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의 점검 계획 수립, 점검범위 설정,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활용, 사업장 내·외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위험의 크기를 산정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내 허용 가능한 위험성 크기를 비교하고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판단
-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

<예시>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고려사항 (단순판매업자)

- [위험요인 점검] 진열, 보관 장소 점검, 제품 표시 확인, 판매 상품 정보 수집 등
- [위험성 결정] 점검 결과 또는 기타 사유로 위험성을 알게 된 경우,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인지 여부 확인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 기관 문의 등)
-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실행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려면 조직에서 어떤 인력을 지정해야 하나요? 새로 채용해야 하나요, 기존 인력이 겸임해도 되나요?

조직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경영책임자는 업무 특성에 맞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고, 원료·제조물 취급과 연동된 위험을 관리할 적정 인력을 지정하면 됩니다. 전담 인력을 반드시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배치된 안전·보건 인력이나 조직을 겸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응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조직도, 해당 법령상 겸직 제한이 없다면 중대시민재해 관련 예방·점검·대응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겸임 여부와 관계없이 역할·권한·협업 절차는 문서로 명확히 하고, 조달 단계의 위해성 검토, 보관·배출·폐기 기준 운영, 외주·렌탈·위탁업체 관리, 유해정보 교육·훈련, 이상징후 보고·대응, 정기점검과 사고 기록 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500인 이상 병원도 별도 채용 없이 기존 안전·보건 인력을 지정·겸임해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관리·시설·급식·약제 등과의 협업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 법령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가 아니며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 부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업무부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그러한 점검과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을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런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QUESTION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의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일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유해·위험요인 점검 후 징후를 발견했을 때 대응조치 중 하나로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신고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1]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약국개설자 및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의2제 1항).

[참고2]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 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재난 안전기본법」 제19조제1항).

또한 판매중단, 가동중단 등의 명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1항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발생우려 → 응급조치 → 취급시설 가동중단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8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석면허용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제2항)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 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행정규칙 제2조제4항

원제취급자는 원제가 유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가축의 피해 또는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자체 방제계획에 의한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가까운 유관기관(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노동관서, 보건소·상수원 취수장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제취급자 : 원제를 생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발견한 위험징후가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관계 법령상 규정을 참고하여 위험징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 개별 관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해설서 “제4장.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이 어떠한 사항을 점검으로써 가능한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2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QUESTION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처벌법」의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정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그와 같은 의무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 업무, 예산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화학물질관리법」 등)은 사고 발생 시 발생신고 등 대응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에 의한 화학사고의 대응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조치의무] ①사업주 등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②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생산·제조 사업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사고발생 즉시 「화학사고즉시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85호)」 제3조 [별표1]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85호)」 제4조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신고사항]

-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사고 피해 현황
-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협조의무]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업자는 다음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나 유관기관이 상황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685호)」 제4조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협조사항]

- 사고 원인 원료·제조물의 확산 현황(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등

더불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

QUESTION

중대시민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이행에 관한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설서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밀한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령 이행]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료·제조물 및 관련 용기 등의 회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명령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고압가스법」 제18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 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용기 등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 또는 건의하는 경우
2. 유통 중인 용기 등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용기 등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화조 등에서 가스가 누출됐지만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나요?

중대시민재해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사망이나 법정 기준의 상해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대시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자체는 방지할 수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사고 신고, 현장 격리·환기, 응급복구, 노출자 확인과 건강영향 관찰, 오염원 제거와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누출 원인이 원료·제조물의 결함이나 취급·관리상의 하자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예방체계(경보·차단·점검·교육)를 점검·보완하고, 이후 인명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성 판단을 다시 검토합니다.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상태에서 외부 업체에 제조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일을 맡긴 쪽도 책임 대상이 되나요? 정수기 등 설비를 렌탈·유지관리 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책임 해당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장소·시설·설비에 대한 권리(소유·점유·임차 등)가 있거나, 사업의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소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면서 공정·설비의 운영기준을 정하고, 작업 지시·점검·승인·중지 권한 등을 행사해 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위탁을 준 업체도 중대시민재해의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수기와 같은 설비를 렌탈·유지관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필터 교체·세척·살균·수질검사 등 관리 범위가 계약서와 실제 운영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점검·교체·수질 기록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이상 신호 인지 후 조치가 적정했는지, 그리고 설계·제조·관리상 결함과 인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렌탈업체가 정기 관리와 부품 교체를 맡고, 사용 기관이 일상 점검과 위생관리를 맡는 구조라면 각각의 관리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책임이 나뉘거나 병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설비 권리나 통제권이 사실상 없고 외부 업체가 공정·설비와 안전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 했으며, 사고가 원료·제조물의 결함과도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조치계획과 결과 보고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회수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수입금지, 미승인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법 제35조제1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법 제36조제2항)

-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개별 관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과 결과보고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치계획서/조치결과보고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이와 같은 이행사항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서 등을 마련하고, 이행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조치계획서의 제출] 조치계획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의 명칭,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 거래업체명 등
- 조치계획량(계획서 제출 당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예상기간
- 조치명령 이행의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 조치사실의 공표 방법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조치결과보고서의 제출] 조치결과보고서 고려사항

- 해당 물질, 제품(제조물)의 명칭, 제조량·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조치계획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QUESTION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합니다(법 제9조제1항).

*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 발생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의 의미가 중요한데, 민사책임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 내용이 정의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도 존재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가목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에게 기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년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 책임법」은 “설계상의 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2호나목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위 규정을 바탕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담배소송 사건”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라 한다.”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고엽제 사건”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甲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乙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염소성여드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하였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사례

QUESTION

원료 및 제조물의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온라인판매중개업자 등도 적용 대상이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 과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원료·제조물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제1항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생산·제조) 생산·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원료로 만들어지는 제조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위탁생산 과정도 포함됩니다.

(판매·유통)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므로 수입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등도 판매중개업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법령에서 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계 법령의 상세는 “제4장. (2) 주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A사는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B사의 디퓨저를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디퓨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방출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디퓨저를 구입하여 사용한 A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최종 사용자인 A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 이후의 과정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의 지사가 있고 제 근무지는 제조 공장이 아니라 완제의약품을 저장 및 보관만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는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 장소, 시설, 설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인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생산·제조·판매·유통과정의 원료·제조물에 적용되므로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지사에 의약품 보관·저장하는 과정이 의약품 제조·판매하는 본사의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일부이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업장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는 중대시민재해라고 볼 수 있나요? (ex. AI의 잘못된 안내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AI를 만든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서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을 말하며, 제조물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UESTION

공원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비료 또는 농약,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구에 설치하는 손소독제, 장례식당의 식당 또는 커피점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등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해당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적용대상 원료·제조물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 시민재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료·제조물의 생산·제조·판매·유통 과정의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반기1회 이상 점검”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실질적인 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하반기 점검은 상반기 점검일부터 6개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예시 : 5월 점검 시, 6개월 이후인 11월 점검).

QUESTION

「식품위생법」의 경우 유통사가 협력사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협력사가 HACCP 인증 보유 등 일부 사항을 충족할 경우 협력사 점검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협력사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협력사의 점검이 면제되는 조건은 없나요?

유통사가 협력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라면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QUESTION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의 점검은 반드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위탁점검도 가능합니다.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점검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개별 관계 법령에는 법정의무 교육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등을 점검하는 것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새로운 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를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조치할 의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이행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 추가, 인력 배치 등 의무 이행에 충분하도록 사업 환경을 개선할 의무를 가집니다.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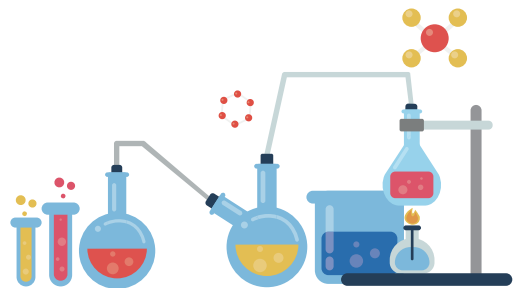
현재 당사에서는 협력업체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따라 지침 및 절차서를 구성하여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해당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며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을 포함한 인력배치 업무부여,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및 대응 등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별표5의 원료·제조물에 포함되므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시민재해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중대산업재해와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주기적인 점검 및 조치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보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는 이행점검의 내용을 포함한다면 중대시민재해에 따른 운영서류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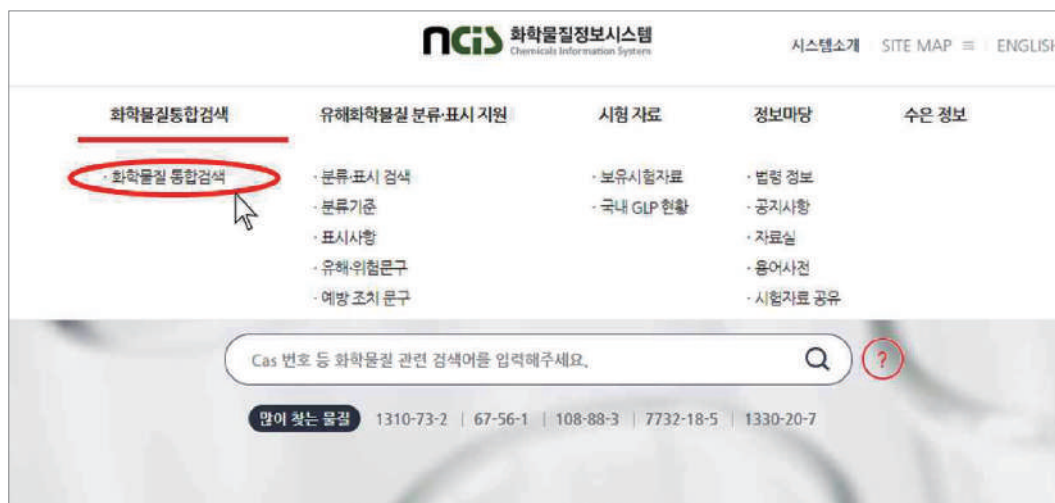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 시스템 이용방법

(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이용방법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기본 정보,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사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산업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기본정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시험자료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화학물질 정보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홈페이지(<https://ncis.nier.go.kr/main.do>) 내 왼쪽 윗부분 ‘화학물질 통합검색’ 클릭



② 검색화면에서 대상 화학물질의 카스번호 (예시: 메틸알코올 CAS No. 67-56-1) 입력 후 '화학물질 검색' 클릭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소개 SITE MAP ENGLISH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수은 정보

화학물질통합 검색

전체 67-56-1 화학물질 검색

검색결과 총 46,102건 결과 내 제 검색 검색 10개씩보기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한글 및 규제정보	비고
			기초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금속류 물질	알, 불연변이 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999999-99-4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s									
99963-78-7	Di-n-octyl tin sulfide polymer		KE-11997							

③ 유해화학물질 부분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오른쪽 '정보보기' 클릭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 Chemical Information System

시스템소개 SITE MAP ENGLISH

화학물질통합검색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 시험 자료 정보마당 수은 정보

화학물질통합 검색

전체 67-56-1 화학물질 검색

검색결과 총 2건 결과 내 제 검색 검색 10개씩보기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유번호						한글 및 규제정보	비고
			기초화학 물질	유해화학 물질	중금속류 물질	알, 불연변이 성 물질	사고대비 물질			
867-56-1	Sodium (S)-lactate		KE-05-1170							
67-56-1	Methanol : Methyl alcohol [이명 : Methanol; Methyl alcohol :]	메틸알코올 [이명 : 메탄올; 메틸알콜 :]	KE-23193	97-1-80					정보보기	등록유예기간 있음

④ 대상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및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확인 (예: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통합 검색

화학물질 검색

규제대상항량정보

메틸알코올, Methanol ; Methyl alcohol, cas번호: 67-56-1

분류구분	고유번호	혼합물(자등)항량정보	비고
유독물질	97-1-80	메틸 알코올[Methyl alcohol: 67-56-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비고
사고대비물질	4	메틸알코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확인

01

표의 개요

02

주요 제도 해설

03

주요 제도의 조문별 해설

04

첨부 참고자료

(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 이용방법 추가 필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및 화학사고대비대응, 화학물질 통계·배출량정보,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사고 대응기관 및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종합정보포털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 현황, 통계, 배출량정보 등을 그림이나 도표,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대응 관련 종사자는 '기관전용 서비스'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취급시설 정보, 대피요령, 방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https://icis.me.go.kr/pageLink.do>)

①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 홈페이지(<https://icis.me.go.kr/pageLink.do>)에 접속



②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와 관련한 카테고리 확인



③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 메뉴 내 필요한 정보 클릭하여 상세 내용 확인



(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이용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기존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등의 신고·승인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정보망 운영 근거[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9조(업무의 위탁) 제1항 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제37조 정보망의 처리 업무]에 따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홈페이지(<https://chemp.me.go.kr/>) 에 접속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메뉴 내 필요한 정보 클릭하여 상세 내용 확인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제도안내	전자민원	알림마당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 제품신고 증명서 취하 묻고답하기 표시 광고관련문의 게시판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규제품 승인신청 변경승인/변경신고	기존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물질동등성 인정신청 허추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선임해임신청 살생물물질 변경승인 살생물물질 변경신고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살생물제품군 승인신청 제품승인 특례신청 제품유사성 인정신청 허추동물 시험자료 부동의 확인 신청 선임해임신청 산업계지원 데이터캡분석 유해성시험자료 교육·실무가이드 지원사업		권라·의무 승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조수입량보고 제조수입량보고 일괄 등록 제조 수입문의게시판 수출입 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수입요건 면제신청 자유판매증명	공지사항 미보완 제품공고 종합자료실 FAQ 자료실 시스템소개 수수료안내 법령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